

# 2023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운영 규칙(학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2002.3.1시행) 및 동법시행령(2002.4.18. 시행)에 의거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사고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

(이하 '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교육원은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14번길32(이천남초등학교)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단계별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기도 4권역(광주하남, 성남,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소재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각 선발 단계를 통해 선정된 자로 한다.
2. 경기도교육청 선발 지침에 의거한 모집 과정에서 모집 예정 인원 내의 추천 순위를 얻은 자
3. 영재교육원장(교육장)이 최종 선정하여 입학을 허가한 자
4. 타 영재교육기관에 2중 지원하지 않은 자
5.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선발 공고에 따른다.

**제6조(소외계층 선발)** 정원 내 10%내에서 별도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는 경기도영재진흥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총 학급수 내에서 초등학교 3,4학년 통합과정, 초등학교 5,6학년 통합과정, 중학교 통합과정으로 1학급당 20명 이내의 정원으로 편성한다.

## 제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각 학급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비교과활동으로 편성하며 세부 내용은 해당년도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9조(수업시수)** 학급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교과활동은 총 72시간 이상(1단계 30시간 이상과 2단계 42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기타 비교과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평가는 단계별 활동 상황에 대한 결과를 영재성발달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 제5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1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2조(휴업일)** 영재교육원 운영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한다.

## 제6장 입학

**제1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로 한다.(단, 학기 초 결원 시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총원하며, 총원가능 기간은 결원일 현재까지 1단계 총 교과수업시수의 10%미만(반올림)인 경우에 한함)

**제14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동의서)** 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 연서의 입학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자)**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며, 학생의 영재교육원 교육활동지원 및 등하원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

## 제7장 전입학 · 휴학 · 퇴학

### 제18조(전입학 · 휴학 · 퇴학)

1.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연계성을 위해 타권역 학교로 전출하는 자는 기존과정 수업 참여는 허용하되 전학은 불허하며, 타시도 학생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2.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하거나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 휴학을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3. 과제불이행, 수업태만, 수업방해, 정당한 지도교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동이 지속될 경우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퇴학시킬 수 있다.

### 제19조(출결)

1. 다음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공결처리)으로 인정한다.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단, 대회 주체가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인 대회만 출석으로 인정하며,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 체험학습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개인)체험학습은 영재교육원 출석 인정에서 제외한다.)
2.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각종 경기 및 대회와 청소년 단체 관련 행사는 학교장의 확인서가 있어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20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연구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년 말에 원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출석 정지
2. 퇴학

## 제8장 과정의 이수 및 수료

### 제22조(이수 및 수료)

1. 각 단계별 교육과정의 이수는 출석일수와 이수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개인 성장 중심 평가가 연간계획에서 정한 이수기준 이하인 경우 수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3. 총 교과 시수의 80% 이상 이수하고, 1, 2단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1단계 교육과정만 이수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제9장 수업료 및 추천

**제23조(수업료)** 일체의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으며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제24조(수익자 부담)** 체험활동 및 캠프활동 등의 비용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사회적배려대상

자 제외)으로 할 수 있으며, 환불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5조(추천)**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 등의 추천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추천한다.

## **제10장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26조(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27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영재교육전담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기타)** 학칙에 정하지 않은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내용은 창의융합상상소 선발 모집요강과 창의융합상상소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의 내용에 따른다.

### **< 부 칙 >**

제1조 : 본 학칙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